

# 해외건설현장 사고통보 가이드라인

해외건설현장에서 사고 발생시 아래 요령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 1. 통보 근거

- 해외건설촉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

## 2. 사고통보 대상

- 근로자(현지인 및 제3국인 포함)가 사망, 납치, 실종된 사고
- 근로자(현지인 및 제3국인 포함)의 다음과 같은 부상(또는 질병)
  -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
  -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
  - 치명적인 전염성 질병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
- 시공중인 시설물의 50% 이상이 망실되거나, 피해금액이 1천만불 이상인 대물사고

## 3. 사고통보 방법

- 통보방법 : 아래 ①, ② 모두 통보
  - ① 사고 현장을 관할하는 재외공관 : 구두/서면 보고
  - ② 해외건설협회 회원정보실 : 구두통보 및  
해외건설e정보시스템(<http://yes.icak.or.kr>) - 제반사고 통보 입력
- 통보 기한 :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
- 문의(해외건설협회) : 02-3406-1041, mid@icak.or.kr

※ 허위보고 또는 미보고시 해외건설촉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해 3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